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1. 8 선고 2021가단584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조재호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E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표1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증여계약, E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표2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증여계약, E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표3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45,000,000원, 피고 C은 20,200,000원, 피고 D은 15,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F생)은 1985. 5. 6. 피고 D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피고 B, C을 낳았으나, 1999. 2. 22. 피고 D와 협의이혼하였다.

나. E은 평소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서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G문중의 임원이 아니어서 그 문중 소유의 경북 봉화군 H, I, J 임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2017. 9.경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지로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2017. 9. 27.부터 2018. 1. 10.까지 5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을 위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이 사건 사기범행 등으로 E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안동지원 2021. 6. 23. 서고 2019고단899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원고로부터 편취한 2억원 중에서 합계 4,500만원을 별지 목록 표1 기재와 같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에게 송금해 주어 증여하였고, 합계 2,020만원을 별지 목록 표2 기재와 같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송금해 주어 증여하였으며, 합계 1,500만원을 별지 목록 표3 기재와 같이 자신의 전처(前妻)인 피고 D에게 송금해 주어 증여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피고들은 E으로부터 송금증여받은 돈을 자신들의 대출금 채무 상환, 생활비, 대학등록금 납부 등에 사용소비하였다.

라. 이 사건 사기범행 및 증여행위 당시에 E은 별다른 직업, 재산, 소득이 없었고, 파주시 K 임야 1,104㎡ 중 157/1135 지분 및 L 임야 31㎡ 중 157/113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수의 지방세, 공과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어 책임재산으로서 별 다른 가치가 없었다.

마. 원고는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E은 원고에게 285,72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원주지원 2021. 11. 25. 선고 2018가합6828 판결,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25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200417 판결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2) 피고들은, 피고 C의 경우 E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맞지만, 피고 B, D의 경우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피고 B, D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1999. 2. 22. 피고 D과 이혼한 이후로 피고들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빛이 있어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범하여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그 편취금 중 합계 8,020만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들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 당시에 E에게 편취금 2억원을 송금해 준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M' 개인이므로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E에 대한 채권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에는 성립하지 않았고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관련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편취금의 송금명의인 'M'은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M의 송금행위는 원고의 기관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있다. E이 원고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여 그 중 합계 8,020만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성립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며 이 사건 증여행위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증여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관련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선의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처분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에 자신들이 E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이라거나, E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1999. 2. 22. 피고 D과 이혼한 이후로 E과 피고들은 따로 떨어져 살면서 평소 거의 왕래나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E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에 피고들로서는 E이 증여하는 돈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들은 E이 평소 피고들을 부양하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고들에게 이따금씩 연락하여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평소 E에게 별다른 직업, 재산, 소득이 없었다는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증여행위를 통해 송금받은 돈이 E의 무자력 상태에서의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E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E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500만원, 피고 C은 2,020만원, 피고 D은 1,500만원과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별지

목 록

1. E의 피고 B에 대한 증여 내역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1	2017.12.27.	30,000,000
2	2017.12.27.	1,000,000
3	2017.12.29.	2,000,000
4	2018.01.10.	10,000,000
5	2018.01.14.	2,000,000
합계		45,000,000

2. E의 피고 C에 대한 증여 내역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1	2017.12.29.	1,200,000
2	2017.12.29.	1,000,000
3	2018.01.10.	10,000,000
4	2018.03.14.	5,000,000
5	2018.03.14.	1,000,000
6	2018.04.23.	1,000,000
7	2018.04.25.	1,000,000
합계		20,200,000

3. E의 피고 D에 대한 증여 내역

순번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1	2017.12.13.	2,000,000
2	2017.12.13.	1,000,000
3	2017.12.28.	2,000,000
4	2017.12.31.	4,000,000
5	2018.01.23.	1,000,000
6	2018.01.24.	5,000,000
합계		15,000,000

